

8.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27일
- 발 의 자 : 이재숙 의원, 권기훈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태우 의원  
류종우 의원, 박우근 의원, 윤권근 의원, 이동욱 의원  
이영애 의원, 정일균 의원, 조경구 의원, 허시영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1월 22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재숙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기존 「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」의 제명을 변경하고,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」를 「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
-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- 사생활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3조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명시하였음.
  - ▷ 주요내용 : 기본방향 및 목표, 추진체계, 실태조사, 현황파악, 예방 및 지원 사항 민간 참여 및 자원 활용방안 등
- 안 제5조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- 안 제7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,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서비스 발굴 및 지원,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8조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·군 및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최근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화 경향의 심화 등으로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면서 가족과 친척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상태로 혼자 생계를 영위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른 뒤에도 오랫동안 방치되는 소위 “고독사”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.
-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적 단절 위기에 놓인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- 현재까지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고독사와 유사한 사망형태를 보이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〈무연고 사망자 현황〉

구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. 6.
발생건수 (명)	116	134	155	189	201	137

\*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

- 대구시에서는 올해 AI 자동안부전화,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등 연간 1억 4,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추진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- 17개 광역시·도에서 이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, 지자체별로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,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.
- 대구시에서 고독사 예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시, 구·군 공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제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< 연구용역 개요 >

- 기 간 : 2021. 3. 22. ~ 12. 6.
- 사업비 / 용역업체 : 4,740만원 /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(회장 : 정병주)
- 연구범위
  - 시간적 범위 : 2022년 ~ 2026년(5년)
  - 공간적 범위 : 대구광역시 전체
  - 내용적 범위 :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활용한 예방과 지원방안 도출

- 또한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 및 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.

- 고독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조사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실태조사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-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고독사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